삼정 KPMG

Deal Advisory 서비스라인 교육 (Valuation)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 평가 [손상검사]

삼정KPMG Deal Advisory Internal use Only

For Discussion Purposes Only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Table of Contents

Contents	
I.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8
Ⅱ. 자산손상	10
Ⅲ.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주요 검토사항	18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관련 Valuation 보고서는 주로 다음과 같으며, 외부 감사인은 평가보고서상의 가정 및 변수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손상 검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르면 영업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해당 기준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K-IFRS 1036 문단2~5) 감사인은 피감사대상이 평가기관을 통하여 제출한 손상검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손상검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주식가치 평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은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제외), 이에 따라 감사이은 피감사대상이 제출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재무보고 목적 비상장 주식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수가격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아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인은 피감사대상이 평가기관을 통하여 제출한 PPA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결합에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For Discussion Purposes Only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Table of Contents

C	Contents		
l.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8	
II.	자산손상	10	
III.	.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주요 검토사항	18	



자산손상 -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자산손상 관련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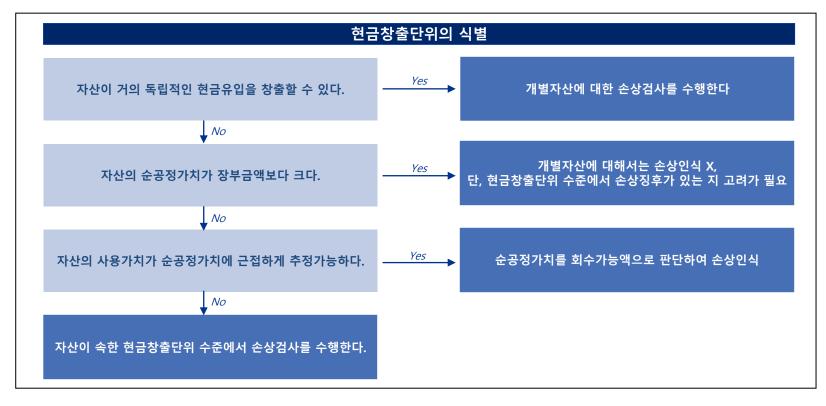


- 손상의 징후에 대해서는 K-IFRS 1036호 문단 12&13 참고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현금창출단위 수준으로 손상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경우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이 금액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각 자산에 적정한 기준으로 배분이 필요합니다.



자산손상 - 손상검사 수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사 수준의 결정 Flow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자산집단이다.(K-IFRS 1036 문단 6)
- 때로는 영업권을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라 <u>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는 없고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할 수 있다.</u> 따라서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은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배분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K-IFRS 1036 문단 81)



자산손상 - 비교대상장부금액의 결정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K-IFRS 1036, 문단 75)

- 이미 인식한 부채 및 운전자본의 고려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K-IFRS 1036, 문단 76)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K-IFRS 1036, 문단 78)
- 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예: 수취채권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과 이미인식된 부채(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그 밖의 충당부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만큼 감소한다.(K-IFRS 1036, 문단 79)

● 공동자산의 고려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공동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포함된 해당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K-IFRS 1036, 문단 102)
 - ▶ <u>공동자산(본사 자산 또는 연구소, 전산 설비 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여 그 장부금액을</u>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어. 영업권처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이월결손금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산정 시 고려한 경우에는??
- 사업결합시 인식한 영업권을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에 따라 인식한 경우에는??



중간 Quiz

손상이 인식되어야 할 수준 및 비교대상장부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틀린 사항은?

- 1.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어 손상검사를 수행할 때, 회수가능액의 원칙적인 추정단위는 개별자산이다.
-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순공정가치를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 수 있다.
- 3.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어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회계처리는 종료된다.
- 4.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간 Quiz

다음의 경우, 지배기업(A)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할 손상차손 인식액을 적절히 판단하였는가?

지배기업 A는 2020년 1월1일 종속기업 B의 지분 80%를 취득하고 영업권 400억원을 기록하였다. A는 사업결합시비지배지분 20%의 가치를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측정하였다. 손상평가 목적상 영업권은 C현금창출단위 그룹에 배분되었 으나 기존 C현금창출단위 그룹에는 B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발생한 영업권 이외의 영업권은 없다. 보고기간말 C현금창출단위 그룹과 B기업 인수 시 인식한 영업권을 포함한 장부금액은 1,400억원이며, C현금창출단위 그룹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한 결과 회수가능금액은 1,200억원이다. 이 경우, 보고기간말 재무제표에 인식될 손상금액은 240억원이다.

- 1. YES(바람직하다)
- 2. No(바람직하지 않다)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사용가치 추정]]

사용가치(Value In Use)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과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K-IFRS 1036, 문단 31)

-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K-IFRS 1036, 문단 33)
-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때에는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비중을 둔다.
-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측을 기초하여 측정한다.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u>더 긴</u>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 <u>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하락한다고 가정</u>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u>이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u>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Question

- ▶ Q1) 경영진이 승인하지 않은 사업계획 사용가능한가??
- ▶ Q2) 5년 이상의 추정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또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 ▶ Q3) 추정기간 이후의 성장률(영구성장률)에 대하여 상승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자산손상 – 회수가능액의 측정 [사용가치 추정II]

사용가치(Value In Use)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과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K-IFRS 1036, 문단 31)

-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제외해야 할 요소
-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
-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
- 법인세환급액이나 법인세납부액

Question

- ▶ Q1) 3년 뒤 경영진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 Q2) 개별자산 또는 영업권 손상검사시 적용가능한 재투자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 할인율(K-IFRS 1036, 문단 55~57/부록A)
-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할인율**로 한다.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될 것이다.



For Discussion Purposes Only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Table of Contents

Contents		
l.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8
II.	자산손상	10
III.	.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주요 검토사항	18



Ⅲ. 영업권 손상검사 & 주식가치평가

재무보고목적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	검토대상	주요 검토 사항 및 빈번한 오류
	평가자 및 평가법인	• 평가자 및 평가법인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적격성(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보고서 작성 목적	• 감사고객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손상보고서 및 공정가치평가보고서) 여부 확인
	행동강령 제 11조	• <u>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관련 회계기준</u> 준수를 명시적 기술
공통	과거 보고서 비교	• 과거 수행된 보고서가 있는 경우, <u>주요 가정이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u>
	평가방법론	• 평가대상에 적절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검토
	비교대상장부가액	• 적절한 <u>비교대상장부가와의 비교</u> 가 되었는 지 검토
	사업계획 확인	• 경영진이 승인한 사업계획 수령 및 검토
	할인율	• 적절한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Ex: 장기 국고채 이자율)
		• <u>적절한 시장위험 프리미엄</u> 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유사기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 (실제 사업내용, 매출구조, 규모, 자본 구조 등 고려)
DCF		• 대상회사의 사업계획 전망치 및 불확실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Specific Risk Premium 고려의 필요성
DCF		• 적절한 <u>타인자본비용</u> 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대상회사의 장부상 차입이자율을 별도의 검토 없이 그대로 타인자본비용으로 준용하는 오류)
		• 할인율을 재계산(필요시 재산정)하여 평가기관이 산정한 할인율과 비교 검토
	영구성장률	• 적절한 영구 성장율의 적용 검토(영구성장률이 관련 산업 및 회사의 성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산정된 경우)



III. 영업권 손상검사 & 주식가치평가

재무보고목적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	검토대상	주요 검토 사항
	법인세율	•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에 공표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추정 영업이익	• 과거 손상검사시 추정치 및 사업계획 대비 실제 실적 달성률에 대한 확인
		• 과거손익 상 비경상적인 손익 여부 및 효과 확인
		• 추정기간의 적정성
		• <u>매출 성장률</u> 을 과거 실적 및 시장 전망치와 비교
		• 적절한 항목으로 원가동인을 구분하여 고정비와 변동비를 추정 하고 있는지 검토
		• 매출원가/판관비 추정시 과거 원가율 및 유사회사 비율과의 비교 /검토
FCFF		• 인건비 추정 시 과거의 인력 규모 및 인건비 수준을 고려
		• CGU의 경우 <u>적절한 공통비 배부</u> 여부 확인
	자본적 지출	• 향후 매출 유지 또는 성장을 고려한 충분한 자본적 지출 반영 여부 확인(과거 투자비 및 유사회사 고려)
	운전자본	• 운전자산 및 운전자본 항목 선정 및 추정의 적정성 검토(과거 회전율 및 회사의 사업계획 검토)
	NOA	• 적절한 비영업용 자산 포함 여부(영업용일 경우 제외 필요)
	IBD	• 적절한 이자발생부채 고려, 영구채, 우선주 등 선순위 고려, <u>리스부채 적용 검토</u>
	기타	• 각종 실적 및 예측치에 대한 back data 확인, 과거 정보와 재무제표 비교 검증
		• 산정 내역에 대한 재계산 검증



QGA



kpmg.com/kr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